

수 신 전국회원사

참 조

제 목 「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」 제도 시행 안내

1.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사업주는 건설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된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하고,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.

2. 이와 관련하여 2012. 6. 1부터 1,000억원 이상 건설공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「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」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동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아 래

1. 교 육 명 :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
2. 법적근거 :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,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, 시행규칙 제37조의2
3. 적용시기 : 2012. 6. 1부터 순차적 시행

대상 건설공사 규모	적용 기준일	비고
1,000억원 이상	2012. 6. 1	o 단계별 적용으로 적용 대상에 맞게 채용시 교육 실시 o 채용되기 전 미리 교육 이수가능(채용시 교육 인정)
500억원 이상~1,000억원 미만	2012. 12. 1	
120억원 이상~ 500억원 미만	2013. 6. 1	
20억원 이상~ 120억원 미만	2013. 12. 1	
3억원 이상~ 20억원 미만	2014. 6. 1	
3억원 미만	2014. 12. 1	

4. 교육대상 : 건설현장에 신규 채용된 일용근로자
  - o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현장 투입 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이수(1회)시 모든 현장 유효
  - o 교육이수 여부는 이수증을 통하여 확인가능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에서도 조회 가능

5. 교육비용

- 교육비는 건설일용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며, 동비용(교육비, 출장비, 수당)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
-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도급자의 안전보건관리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원도급자는 하도급자 건설일용근로자 교육에 대한 사항을 지원해야 함

6. 교육기관

-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교육기관  
※ 교육기관 등록현황 : 붙임2 참조

7. 교육시간 : 4시간

-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건설안전의식 제고사항
- 건설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등

8. 문의처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지정 교육기관

붙임 1.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안내문 1부.

2.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현황 1부. 끝.

(붙임자료는 철·콘홈페이지 [www.chulcon.or.kr](http://www.chulcon.or.kr) -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)

대한전문건설협회    철근콘크리트공사협회  
회    장    유    정    호



---

담당자    부장 서말례    국장 길영국

시행    철콘 제180호(2012. 5. 2)

우 156-714   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95-70(전문건설회관 8층) / <http://www.chulcon.or.kr>

전화 02-3284-1161~3    전송 02-3284-1164 / 전자우편 [kosca210@kosca.or.kr](mailto:kosca210@kosca.or.kr)